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708 제출연월일: 2024. 7. 12.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자막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경보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방위 편성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의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를 편성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 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나 민방 위 대원의 교육훈련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원민방위대의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 및 제18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자로만 구성되는 지원민방위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되는 경우에는 행 정안전부장관 등의 민방위대 동원 명령과 동원 명령 위반 시 부과 되는 과태료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 다. 민방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실시(안 제23조의3 신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민방위 대장 및 민방위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 라. 민방위 경보 전달을 위한 조치 요청(안 제33조제6항 신설)

민방위 경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음성방송 또는 자막방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게 자막을 게재해 줄 것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민방위협의회"를 "중앙민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중앙민방위협의회"를 각각 "중앙협의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민방위협의회"로,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긴급하면"을 "긴급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경우"의 기준과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는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군부대의 장의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자료제공 요청)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대원의 편성과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제18조제1 항 본문에 따라 민방위대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 록번호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 2. 재직증명, 병역사항 등 제1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 3. 출입국기록 등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 제11조제3항 중 "중앙민방위협의회"를 "중앙협의회"로 한다.
-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7조(설치 등) ①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원한 사람으로만 구성되는 민방위대를 제1항의 민방위대와 별도로 둘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민방위대(이하 "지원민방위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민방위대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지원하여"를 "지원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원한 대원에 대해서는 제26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제1 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3항 중 "중앙민방위협의회"를 "중앙협의회"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대원 및"을 "대원,"으로, "대원은"을 "대원 및 지원민방위 대원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읍·면·동장에게"를 "해당 대원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로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3(민방위 담당자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2. 민방위 대장
 - 3. 제23조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등기우편"을 "우편"으로, "송달하여야"를 "보내야"로 한다.

제27조 중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를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로, "하여서는"을 "해서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피난, 인마(人馬)의 통행, 철도・ 궤도(軌度)"를 "이동・대피 명령, 사람과 동물의 통행 제한 명령, 철도・궤도(軌道)"로 한다.

제32조의2제5호 중 "중앙민방위협의회"를 "중앙협의회"로 한다. 제3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경보 전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 및 관리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사업자 및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문자 송신
- 2.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음성방송 또는 자막방송실시
-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 디지털광고물 자막 게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아 혅 했 개 정 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 ①민방 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 ①----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둔다. ---- 중앙민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②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②중앙협의회-----조직 •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③중앙협의회-----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①민방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①----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 를 두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치도지사-----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시 • 광역시 • 도민방위협의 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 도 • 특별자치도민방위협의회--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 ---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 속으로 시・군・구민방위협의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 한다)를, 읍・면・동장 소속으 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로 읍 • 면 • 동민방위협의회(이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하 "읍 • 면 • 동협의회"라 한다)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를 각각 둔다.

② (생략)

②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저]9조(협조) ①
	<u>긴급한 경우에는</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경우"의 기준과 민방위대의 동
	원을 요청할 수 있는 지방행정
	기관의 장이나 군부대의 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9조의2(자료제공 요청) 시장·
	군수·구청장은 민방위 대원의
	편성과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
	앙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
	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

제11조(기본 계획) ①·② (생략)

③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 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제
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민방
위대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
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
한다)

- 2. 재직증명, 병역사항 등 제18

 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 3. 출입국기록 등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제11조(기본 계획) ①·② (현행 과 같음)

(3)	
	중앙협의
<u> </u>	

④ (생 략)

제17조(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 로 민방위대를 둔다.

제18조(조직) ① (생 략)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u>지원하여</u>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③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설치 등) ① 민방위를 수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 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 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원한 사 람으로만 구성되는 민방위대를 제1항의 민방위대와 별도로 둘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민방위대(이하 "지원민방위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민방위대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원하여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이 경우 지원한 대원에 대해서 는 제26조, 제36조, 제38조, 제 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3-----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 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편성) ① ~ ④ (생 략)

- ⑤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 기술지원 <u>대원 및</u> 직장 민방위 <u>대원은</u> 중복하여 편성하지 아니 한다.
- ⑥ ~ ① (생 략)

제20조(편성 절차 등) ① (생 략) 저

②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으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신 설>

<u>중앙협</u>
의회
세19조(편성) ① ~ ④ (현행과 같
<u></u> 이
5
대원,
대원 및 지원민방위 대원은
.
⑥ ~ ⑪ (현행과 같음)
세20조(편성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2
사람이 해당 대원 거주
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
게
③ ~ ⑦ (현행과 같음)
세23조의3(민방위 담당자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연 10
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행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①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 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 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 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

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 는 사람 2. 민방위 대장 3. 제23조의 교육훈련을 담당하 는 교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① ---------- 보내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직장 보장) <u>타인을</u> 고용하 제27조(직장 보장) <u>고용주는 고용</u> 된 사람이 -----

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①행정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①----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 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 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으 며, 응급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 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제3 조제3항에 따라 대집행(代執行) 할 수 있다. 1. 주민의 피난, 인마(人馬)의 | 1. ---- 이동·대피 명령, 사 통행, 철도 · 궤도(軌度) · 차 람과 동물의 통행 제한 명령, 량이나 그 밖의 교통 수단에 철도・궤도(軌道)-----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 과 등화(燈火) 및 음향(音響) 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32조의2(수습 및 복구) 행정안 제 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 5. 그 밖에 수습 및 복구와 관련 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 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결 정한 사항
- 제33조(민방위 경보) ① ~ ⑤ (생략)

<신 설>

제32소의2(수습 및 목구)
1. ~ 4. (현행과 같음)
5
<u>중앙협의회</u>

- 제33조(민방위 경보) ① ~ ⑤ (현 행과 같음)
 -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 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 및 관리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자 및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

 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기

 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 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 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문자 송신
- 2.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 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 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음성 방송 또는 자막방송 실시
-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 털광고물의 관리자: 디지털광 고물 자막 게재